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2021. 05. 31.

한국환경공단 이석범 차장



# 순서

1. 화학물질관리법의 자체점검 규정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1. 화학물질관리법의 자체점검 규정

# 1. 화관법의 자체점검 규정

##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주 1회 이상 취급시설을 점검해 자체점검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자체점검대장 양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 1. 화관법의 자체점검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점검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점검자성명	서명

## ■ 자체점검대장(양식)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 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선임 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점검  
취급시설별로 자체점검대장 작성 및 보관**

비고

1.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양식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 1. 화관법의 자체점검 규정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b>취급 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b>	법 제34조의2제6호, 법 제35조 제2항제12호	<b>개선명령</b>	<b>경고</b>	<b>영업정지 5일</b>	<b>영업정지 1개월</b>

##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 1. 화관법의 자체점검 규정

## ■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해야하는 진정한 이유

하인리히 법칙  
'1:29:300'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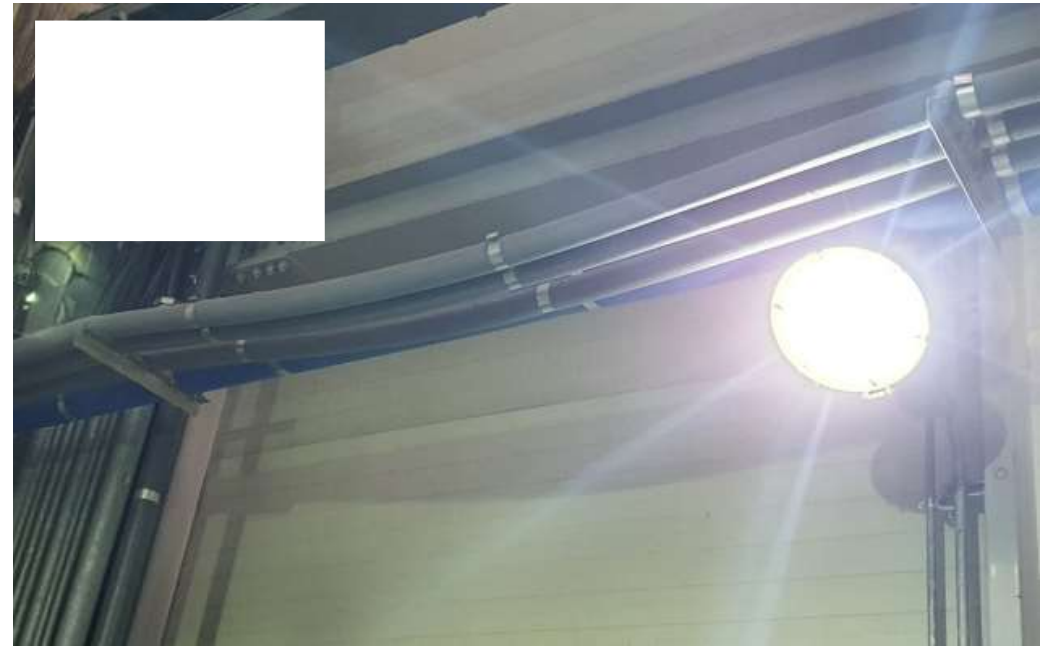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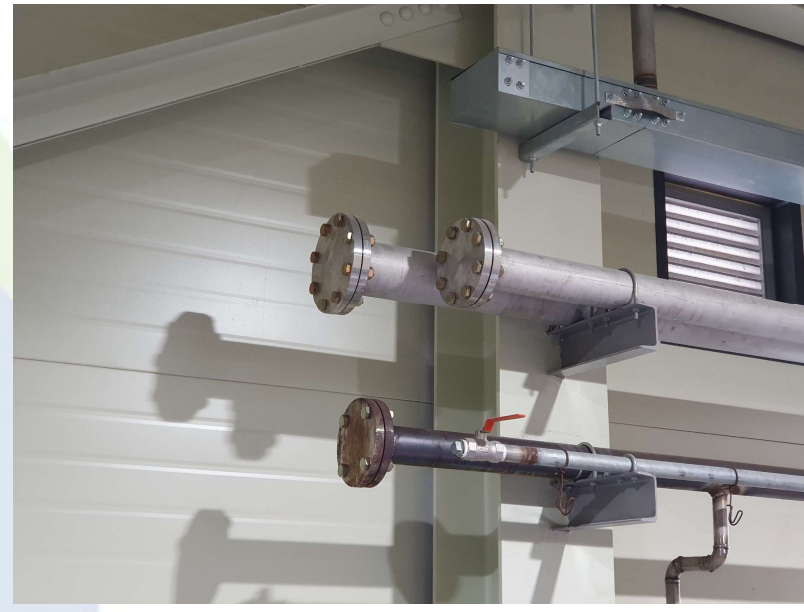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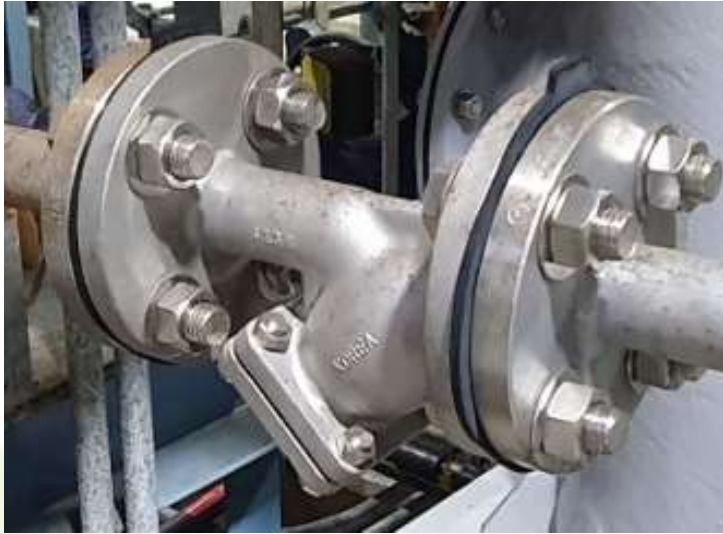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 · 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 · 누출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③ 액체 ·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포대〉



〈말통〉



〈플라스틱 드럼〉



〈철제 드럼〉



〈IBC〉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③ 액체 ·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 개인보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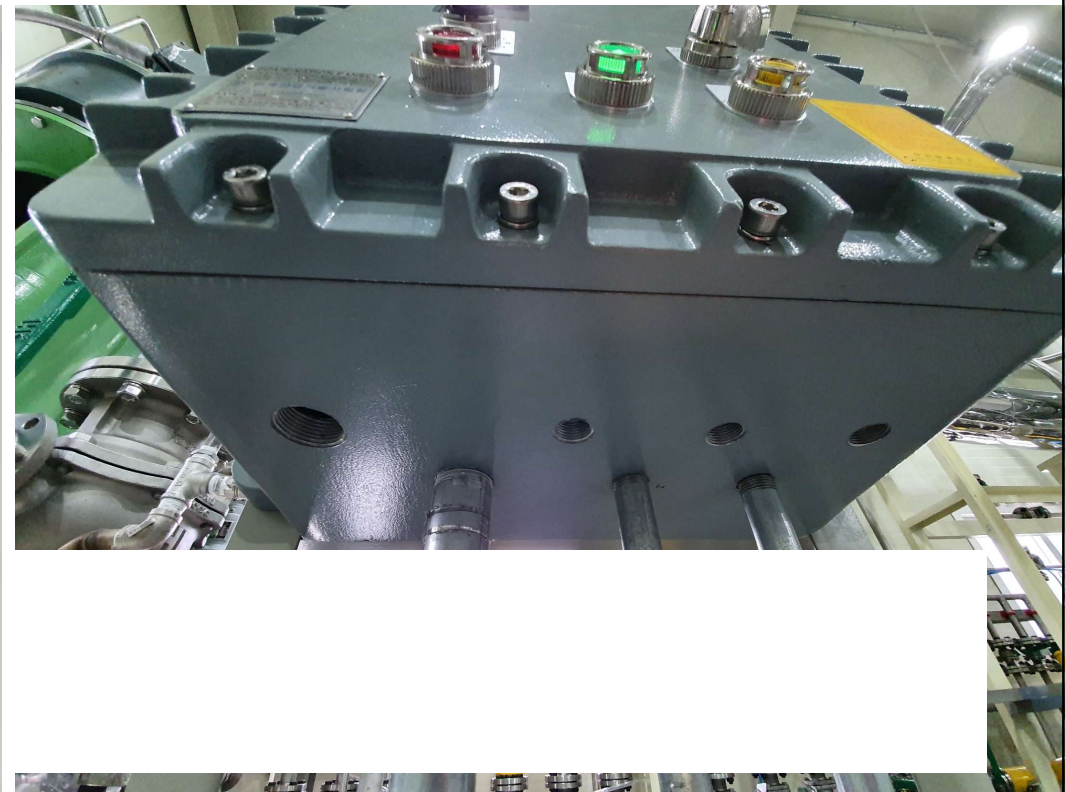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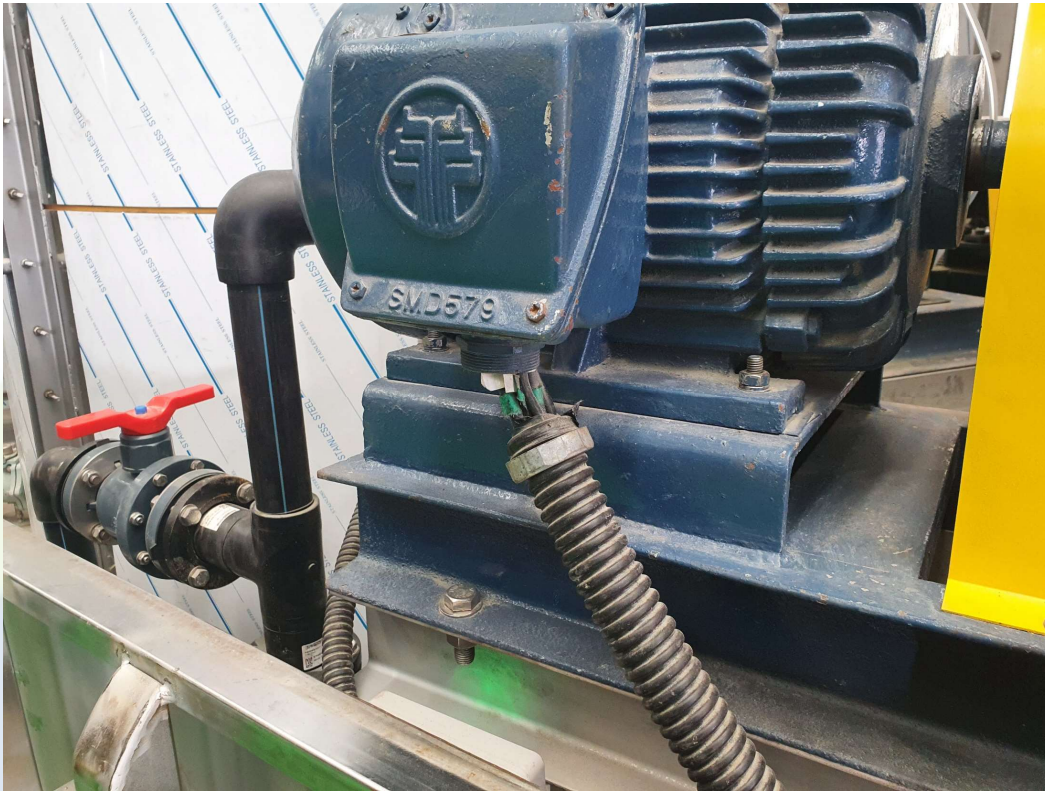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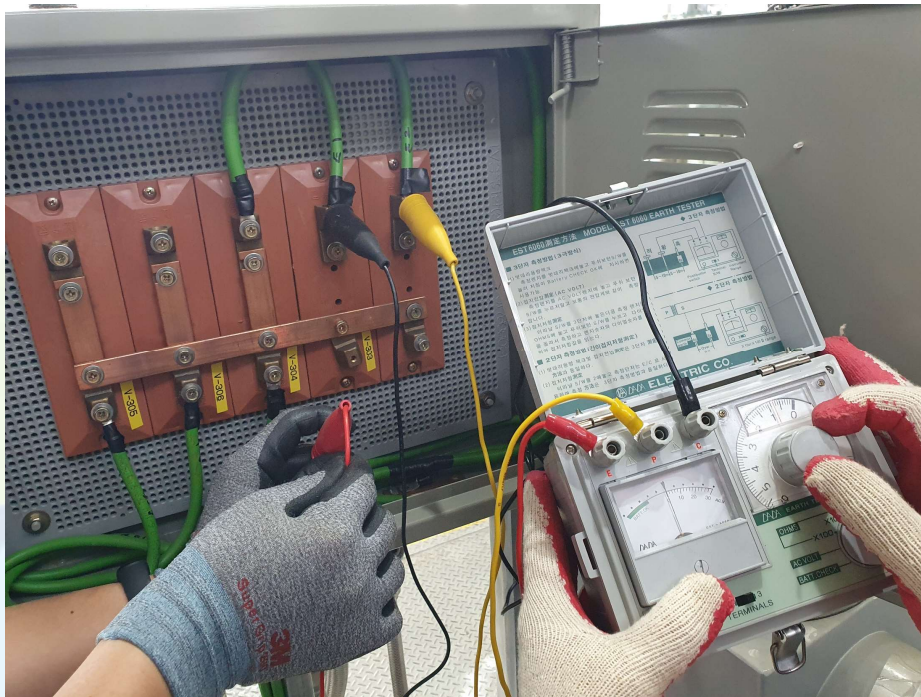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 ·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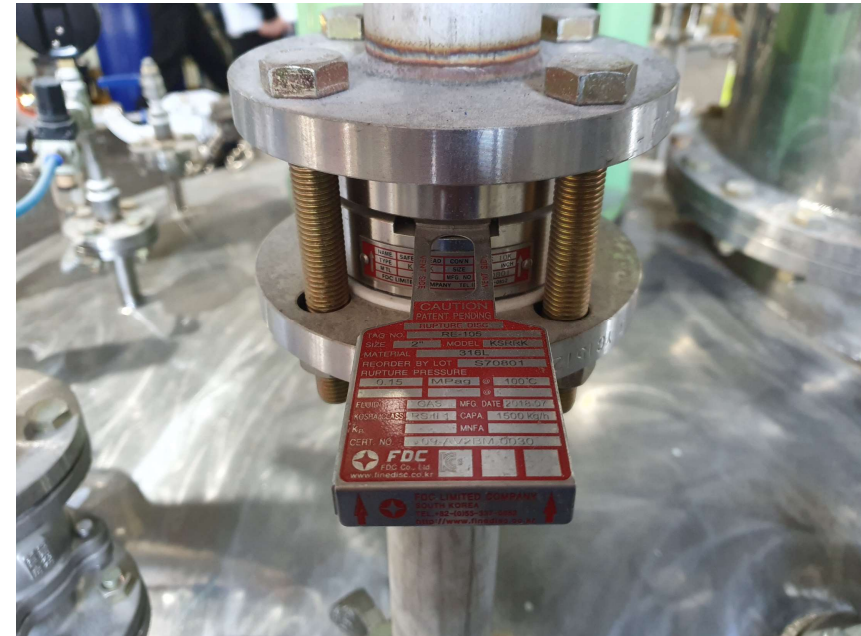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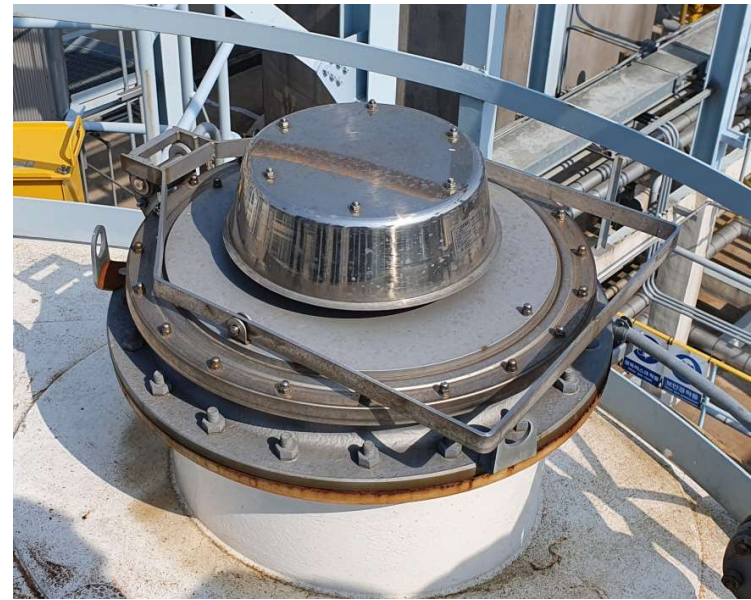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 그 밖의 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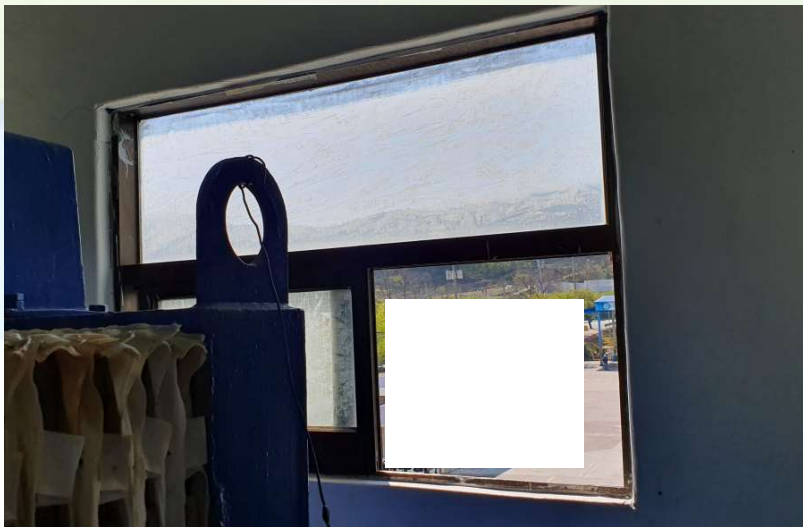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 그 밖의 점검사항



## 2. 자체점검 항목 및 사례

### ■ 그 밖의 점검사항





**감사합니다.**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  
**한국환경공단**